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44호 2003. 12. 6)

총무위원회

2003. 12. 13(토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2. 4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3. 12. 4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3. 12. 6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개정이유

-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4명 중 실업대책(공공근로 사업)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3. 12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(9급1명)으로 환원하고, 한시정원을 재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실업대책(공공근로 사업)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 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시정원 환원
 - 한시 정원(행정6급 1명)→상시정원(행정9급1명)
- (2) 한시정원 재 규정(안 조례 제479호)
 - 한시정원 : 4명(5급1, 6급1, 7급1, 8급1)→ 3명(5급1, 7급1, 8급1)
 - ※ 한시정원(4명) 존속기한
 - 실업대책 인력(지역경제과 행정6급 1명)→2003. 12. 31
 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(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)
 - 정보화사업 추진인력(민원정보과 전산7, 8급 각1명)→2004. 6. 30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박명돈)

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실업대책(공공근로 사업)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1

명 존속기한이 2003. 12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(9급1명)으로 환원하고, 한시 정원 4명(5급1, 6급1, 7급1, 8급1)에서 3명(5급1, 7급1, 8급1)으로 재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